

1/ 배반당한 ‘해방’: 미군 점령하 ‘재일조선인 문제’와 냉전, 1945~1948*

최덕효



조선인학교 폐쇄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효고현(兵庫県) 청사 앞에 모인 재일조선인들과 일본경찰(1948년 4월 24일)

출처: Records of Trials by General Provost Courts, 1948~1950, Box 1515, RG 33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USA.

최덕효(崔德孝) 영국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 전임강사. 코넬대학교 역사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포니정재단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해방 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재일조선인 문제를 다룬 박사논문(“Crucible of the Post-Empire: Decolonization, Race, and Cold War Politics in U.S.-Japan-Korea Relations, 1945~1952”)으로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ICAS) 최우수인문학박사논문상을 수상했다. 주요 논문으로 “Fighting the Korean War in Pacifist Japan: Korean and Japanese Leftist Solidarity and American Cold War Containment”(Critical Asian Studies, 2017)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일본연구소 발전기금(위임기금-통보 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4/ILBI.2020.22.14>

1. 들어가며

일본은 냉전의 시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일본의 경우 냉전의 도래는 주로 미국의 점령정책 전환(‘역코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 미국의 냉전 전략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경제 부흥의 견인을 떠맡게 되자, 이전까지 ‘비군사화’와 ‘민주화’ 개혁이 주축을 이뤘던 초기 점령정책은 ‘안정’과 ‘부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48년에 들어서자 미국정부는 ‘봉쇄정책’(containment)의 관점에서 대일점령정책을 검토하게 되었고, 10월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NSC])가 대일점령정책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문서 「NSC13/2」를 채택했다.²

일본에 도래한 냉전에 관한 논의들은 국내 정치와의 관계에 주목하기도 했다. 특히 점령 당국과 일본정부·기업에 의한 ‘레드 퍼지’(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들의 추방)나 ‘치안 체제’의 형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은 국내 정치의 반공 시프트를 이른바 ‘역코스’와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며,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냉전과 국내 체제의 연동이라는 시야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1949년 4월 도입된 ‘단체 등 규정령’(단규령)을 ‘레드 퍼지’ 및 ‘치안 체제’ 형성의 중요한 기점으로 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규령의 주된 표적이 된 것이 좌익계 재일조선인단체, 즉 재일본조선인연맹(在日本朝鮮人連盟, 이하 ‘조련’)과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在日本朝鮮民主青年同盟, 이하 ‘민청’)이었다는 점이다. 9월 8일 일본정부는 조련(朝連)과 민청(民靑)

1 일본헌대사의 냉전과 ‘역코스’론에 대해서는 歴史学研究会 編, 『日本同時代史2』, 青木書店, 1990, 232~240쪽; 中村政則, 『戦後史』, 岩波書店, 2005, 32~37쪽; Carol Gluck, “Entangling Illusions: Japanese and American Views of the Occupation,” Warren I. Cohen, ed., *New Frontiers in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John W. Dower, “Occupied Japan and the Cold War in Asia,” *Japan in War and Peace: Selected Essays*, New York: New Press, 1993.

2 五十嵐武士, 『戦後日米関係の形成』, 講談社, 1995; Bruce Cumings, “Japan’s Position in the World System,” Andrew Gordon, ed., *Postwar Japan as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3 平田哲男, 『レッド・ページの史的究明』, 新日本出版社, 2002; 荻野富士夫, 『戦後治安体制の確立』, 岩波書店, 1999.

을 ‘반민주주의적·폭력주의적 단체’로 규정하며 단규령을 적용했고 전 조직의 해산을 명령했다.⁴ 일본정부가 강행한 조련과 민청 해산은 ‘극좌익을 향한 제일탄(第一彈)’, ‘좌익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으며, 일본공산당의 비합법화를 겨냥한 전초전이었다.⁵ 즉 글로벌 냉전과 국내 체제의 연동은 재일조선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전개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 해 전인 1948년, 재일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을 폭력적인 형태로 경험하고 있었다. 1948년 4월 24일, 점령 당국이 점령 개시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언’[엄밀히는 ‘한정적 비상사태(Limited Emergency) 선언’]을 발표해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옹호투쟁을 탄압한 사건(‘고베사건’)은 유명한데, 이는 실상 일본 국내에서 전개된 글로벌 냉전의 양상을 적확히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역사학자 아라 다카시(荒敬)가 지적했듯, 조선인학교 폐쇄가 강행된 후 각지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자, 점령 당국은 ‘재일조선인 가운데 특히 오사카 지구에 거주하는 이단분자들이 조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동과 연대하여, 재일점령군을 곤란에 빠트리려는 목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폭동을 일으키며 여타 민중 소요를 지원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⁶ 당시 미군정하에 있었던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저항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점령 당국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옹호투쟁을 조선의 저항운동과 연계된 것으로 인식했다. 즉 고베사건을 두고 점령 당국이 시행한 강경조치의 배경에는 5월 10일 남한에서 열릴 총선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문제가 아시아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 내 ‘붕쇄정책’의 실천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베사건은 미국의 냉전 전략이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문제에 직접적인 폭력으로 닥쳐 온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옹호투쟁이 일본제국의

4 이러한 조치에 따라 조련 조직의 48개 지방본부, 620개 지부, 1214개 분회와, 민청 조직의 48개 지방본부, 458개 지부, 306개 분회가 모두 해산되었다. 또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団)의 미야자키(宮城)현 본부,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朝鮮建國促進靑年同盟)의 시오가마(塩釜) 본부도 해산 대상에 포함되었다.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241쪽.

5 荻野富士夫, 『戦後治安体制の確立』, 93쪽.

6 荒敬, 『日本占領史研究序説』, 柏書房, 1994.

황민화교육으로 부정되었던 민족성을 되찾으려는 실천, 다시 말해 ‘민족해방’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고베사건은 일본의 ‘포스트콜로니얼 문제’와 글로벌 냉전의 교차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재일조선인 문제’는 일본의 글로벌 냉전 도래의 ‘장’(場)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포스트콜로니얼’과 ‘글로벌 냉전’의 교차라는 관점에 새로운 접점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후 세계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는, 미소 냉전이라는 대립구조의 출현과 함께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의 개막이라는 국제 정치의 또 다른 전개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국제인권레짐의 형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미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새롭게 검증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의 ‘해방’이 놓여 있었던 복합적인 구조와 조건들을 조명해 볼 것이다. 고베사건을 한반도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한 아라 다카시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와 냉전구조의 형성 과정 속에 미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위치지어 왔다.⁷ 본고는 이 같은 기존의 접근법 위에, 전간기(戰間期)에 기원을 둔 전후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을 더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민족 교육 옹호투쟁에 대한 탄압이나 조선·민청의 강제 해산으로 상징되듯, 재일조선인운동은 어떠한 ‘해방’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일본정부의 구태의연한 지배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냉전구조라는 제약 조건마저 더해지면서 ‘해방’이 ‘봉쇄당한’⁸ 것이다. 그렇다면 전후 국제인권레짐의 개막은 미국의 점령정책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해방’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

7 예를 들어 宮崎章, 「占領初期における米国の在日朝鮮人政策: 日本政府の対応とともに」, 『思想』 734号, 1985. 8.; 小林知子, 「GHQの在日朝鮮人認識に関する一考察: G-II民間諜報局定期報告書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32集, 1994; 로버트·리켓, 「GHQの在日朝鮮人政策」, 『アジア研究』 第9号, 1994;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勁草書房, 1997; 김태기, 「미국무성의 대일점령정책안과 재일조선인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33집, 2004; 김광열 외,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8 鄭米桓, 『朝鮮獨立への隘路』, 法政大学出版局, 2013.

떻게 작용했는가. 이 글은 주로 점령정책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해방민족’ 규정과 민족교육 문제를 고찰하면서, 재일조선인 문제를 보다 너른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해방민족’ 규정

주지하다시피 재일조선인은 미국의 초기 대일점령정책에서 ‘해방민족’으로 취급되었다. 1945년 11월 1일 미국정부가 작성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일본 점령 및 관리를 위한 항복 이후 초기의 기초적 지령」은,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의 처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귀관(貴官)은 군사상 안전이 허락하는 한 대만계 중국인(Formosan-Chinese)과 조선인을 해방민족(liberalized peoples)으로 처우한다. 그들은 이 지령에 사용된 ‘일본인’이라는 용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일본의 신민(Japanese subjects)이므로, 필요한 경우 귀관은 그들을 적국인(enemy nationals)으로 처우해도 좋다.⁹

미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입안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김태기의 연구에 따르면, 당초의 정책안에는 재일조선인·대만인이 ‘일본 신민’이라는 문구가 먼저 놓이고, 그 뒤에 ‘해방민족’으로서의 처우가 규정되어 있었다. 즉 “재일조선인을 일본 신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애초에 기본을 이루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해방민족으로서의 취급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이 ‘해방민족’ 규정에 반영된 것이 미국의 한반도점령정책 입안 과정에

9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November 1, 1945), Division of Special Records,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ed., *Documents Concerning the Allied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Volume I: Basic Documents*, January 1949, pp. 129~131.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1945~1950』, 湖北社, 1978, 10쪽.

10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66쪽.

서 제시된 ‘해방국’으로서의 규정이다. 한반도점령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조선을 “카이로 선언의 규정에 따라 (중략) 군의 안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방국으로서의 처우에 기초하여” 점령통치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이루어졌다.¹¹ 김태기에 의하면 이러한 한반도점령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해방민족’ 규정이 재일조선인정책으로 우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민족’으로서의 처우란 무엇을 의미했을까?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는 이 규정을 “기본적으로 립 서비스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간주하지만,¹² 사실 점령 당국(SCAP)에게 ‘해방민족’ 규정은 재일조선인의 본국 귀환(repatriation)과의 관계 속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SCAP 외교국(Diplomatic Section)의 시볼드(William J. Sebald)가 1948년 5월 국무성에 보낸 「재일조선인의 지위」라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인의 ‘해방민족’으로서의 지위는 본 사령부(SCAP)에 의한 처우에서는, 조선인의 조선 귀환을 장려하고 귀환을 위한 온갖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밀줄은 인용자).¹³

당초 SCAP의 재일조선인정책은 오로지 조선인을 ‘몰아내는’(get them out) 데에만 중점을 두었으며,¹⁴ 점령 개시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1월 1일에는 「일본 내 비일본인 송환」(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이라는 지령을 발표해 일본정부에 재일조선인(및 재일대만인·중국인)의 본국 귀환을 위

11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 Occupied by U.S. Forces”(SWNCC 17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 1074.

12 大沼保昭, 『單一民族社会の神話を超えて』, 東信堂, 1986, 35쪽.

13 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Status of Koreans in Japan”(May 6, 1948), 895.012/5-648, Reel 5,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14 주한 미군정청(USAMGIK) ‘Displaced Persons Division’ 소속 윌리엄 게인(William J. Gane)은 1946년 5월 문서로 보고된 SCAP 고관의 말로 이를 소개하고 있다. William J. Gane, *Foreign Affairs of South Korea: August 1945 to August 1950*, Ph.D. Thesis, Northwestern University, 1951, p. 152.

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지시하게 된다.¹⁵ 또한 다음 해 2월 17일에는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및 대만인 등록」이라는 지령을 발표하여 일본정부에게 해당자들의 등록과 귀국 의사 확인을 명령했다. 이 지령에 의하면 등록하지 않은 자, 귀국의사를 표하지 않은 자, 또는 귀국의사를 표해 등록했음에도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출발하지 않은 자는, 정부의 비용으로 귀국하는 ‘귀환의 특권’(privilege of repatriation)을 상실하게 된다.¹⁶ 흥미롭게도 이 ‘귀환의 특권’은 재소자에게도 적용되었다. 3월 10일부 점령군 부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바(千葉) 현에서는 조선인이 수감된 현내 모든 형무소에 미군 사관(士官)이 방문해 경범죄로 기소된 자들에게 ‘조선 귀환 희망 여부’를 확인했다. 전원이 귀환을 희망했으므로 점령군은 지바현 경찰 당국에 46명 전원의 석방을 지시했다.¹⁷ 다른 점령군 부대에서는 2월 중에 도합 85명의 조선인 미결수를 송환을 위해 석방했다고 한다.¹⁸ 규슈 점령군 부대는 이러한 조치를 ‘무차별적 송환의 실시’(practice of indiscriminately repatriating)라 보고했는데,¹⁹ 확실히 SCAP에 의한 초기 재일조선인정책의 핵심을 찌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SCAP의 재일조선인정책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과잉인구를 가급적 감소시킴으로써 극도의 부족 상태에 시달리던 일본의 식량사정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경제적 관점과, ‘전송국민으로서 일본의 경찰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치안대책으로서

15 “SCAPIN 224: 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November 1, 1945), 竹前榮治 編, 『GHQ指令總集成』, エムティ出版, 1993에 수록.

16 “SCAPIN 746: Registration of Koreans, Chinese, Ryukyans and Formosans”(February 17, 1946), 竹前榮治 編, 『GHQ指令總集成』에 수록.

17 82nd Military Government Company, “Unit Occupational History Report”(March 10, 1946), Folder: MGCO-82-0.2, Box 17469, WWII Operations Reports, 1941~48, Military Government, Record Group 407(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1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NARA)

18 “Historical Events: Military Government Section for the Month of February 1946,” 大矢一人 編, 『軍政(ナンバーMG)レポート』第3卷, 現代史料出版, 2007, 8쪽.

19 92nd Military Government HQ & HQ Company, “Unit Occupational Historical Report”(March 1946), 大矢一人 編, 『軍政(ナンバーMG)レポート』第9卷, 137쪽.

송환한다’는 치안의 관점에서 설명한다.²⁰ 그러나 이처럼 일본 국내의 문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맥락 속에 SCAP의 송환정책을 놓고 이해해 볼 때, ‘해방민족’ 규정이 무엇을 의미했는가(혹은 의미하지 않았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SCAP의 송환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연합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품고 있었던 소수민족(national minorities)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공통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소수민족의 자발적 및 강제적 송환[‘인구의 이동’(population transfer)]이라는 물리적 배제를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념은 전간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붕괴라는 경험의 산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국제 평화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족자결’ 원칙에 의거해 중동부 유럽에는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수립되었다. 민족국가의 탄생과 국경선의 변경으로 발생할 소수민족 문제와 민족 분쟁의 예방책으로, 국제연맹이 관여하는 소수민족 국제보호제도가 만들어졌다. 전승국은 패전국(독일을 제외)과 중동부 유럽의 신흥국(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에 대해 해당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필요에 따라 국제연맹이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²¹ 이 조약들은 체결국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할 뿐 아니라, 소수민족에게 평등의 권리와 ‘모국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것, 더욱이 종교·교육시설 설치의 권리를 인정케 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수민족 집단에게 종교·교육의 ‘자치’(autonomy)를 용인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²²

20 宮崎章, 「占領初期における米国の在日朝鮮人政策」, 132쪽; 大沼保昭, 「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程 2」, 『法律時報』 50卷 5号, 78~79쪽.

21 Carole Fink,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Minorities Question," *World Affairs*, 157, 4, April 1995; Thomas D. Musgrave, *Self-Determination and National Mino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41~46.

22 Helmer Rosting, "Protection of Minorities by the League of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 3(October 1923), pp. 647~649.

그러나 주로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만 이러한 보호 의무가 적용된 탓에 해당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다, ‘민족자결’ 및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 이념이 나치 독일에 의해 악용되기도 했으므로, 이러한 국제제도는 제2차세계 대전 이전에는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1938년 3월 나치 독일은 ‘민족자결’을 내세워 오스트리아를 병합했고, 독일계 주민의 보호를 구실로 삼아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Sudetenland) 지방의 병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데텐란트의 독일계 주민들이 나치에 호응해 민족 분쟁을 부채질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결국 해체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연합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이제껏 취해 왔던 적극적 보호정책(언어·문화·종교의 보호)이 아니라, 동화와 물리적 배제(자발적·강제적 이동)를 통해 민족 분쟁의 불씨가 될 소수민족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게 되었다.²³ 즉 국내의 소수민족을 가능한 한 ‘본국’으로 송환하는 한편, 남은 자들에게는 동화를 강제하는 것이 국내의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독일 항복 이후 1945년 7월 영·미·소 지도자들이 참여한 포츠담 회의에서는 중동부 유럽에 남아 있던 독일계 주민들을 ‘질서 있는 인도적 방법’으로써 독일에 이주시키도록 결정되었는데, 이는 전후 처리를 담당한 지도자들이 강제적 이주를 ‘마이너리티 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유효한 수단’이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²⁴ 또한 다음 해 7월에 개최된 파리평화회의에서는 영미 대표단이 중동부 유럽의 소수민족 문제를 두고, 적극적 보호정책에 의거한 마이너리티 존속이 아닌 ‘동화’의 필요성을 주창했다.²⁵

이처럼 소수민족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유럽의 전후처리 구상 속에서 지배적이었는데, 미국의 재일조선인정책 입안과정에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다. 1945년 4월에 국무성 극동국(極東局)의 맥쿤(G. M. McCune)

23 Inis L. Claude, *National Minorities: An International Problem*,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p. 80.

24 Inis L. Claude, *National Minorities: An International Problem*, p. 116.

25 Joseph B. Schechtman, *Postwar Population Transfers in Europe, 1945~19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2, p. 17.

이 작성한 「재일조선인의 본국 귀환」(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이라는 정책 제언문서는 종전 이후 대다수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본국으로 귀환할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논하는 가운데, 식량부족이나 실업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맥쿤은 종전 시 존재할 재일조선인의 수를 150만 명으로 예상하면서, 그 가운데 120만 명이 ‘일본인화 프로파간다’(Japanization propaganda)에 그다지 감화되지 않았으므로 “소수민족집단”(racial minority bloc)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인에게 “적개심”(antagonism and hostility)의 표적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남은 30만 명에 대해서는 일본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음지도 모르므로 “심각한 마이너리티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들 역시 다수는 ‘일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본인에 의한 “상당한 민족 증오”(considerable racial animosity)의 대상이 될 것이라 지적한다. 또한 그는 “진정으로 동화된 조선인 수”는 5만 명에도 달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²⁶ 재일조선인의 송환 가능성을 논한 배경에는 이처럼 민족 갈등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경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국무·육군·해군 조정위원회(SWNCC)에서 이루어진 최종 정책입안 과정에서, 민족문제와 경제문제가 재일조선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난민국(War Refugee Board)의 제인 캐리(Jane C. Carey)가 8월 8일 SWNCC의 극동소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초안 「일본 내 난민」(Displaced Persons in Japan)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및 대만인)의 존재가 “일본의 물자와 경제를 소모할 뿐 아니라 사회 혼란의 씨앗(source of disorder)이 되”므로, 그들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귀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 일본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잔류를 희망할지 모르나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잔류 허가는 “오직 일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자들”(only those who are

26 “(K-7 Preliminary) Korea: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April 25, 1945), Box 12, Records of the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941~48, 1950, RG 59, NARA.

acceptable to the Japanese)에 제한한다.²⁷ “일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맥킨이 말하는 ‘진정으로 동화된 조선인’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화 조선인’에게만 잔류를 인정하고, 그 외 조선인들은 귀환시키는 것이 재일조선인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몇 가지 수정을 거치며 캐리의 정책 초안에서는 잔류 허가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었고,²⁸ 10월 5일 극동소위원회가 SWNCC에 제출한 정책안에서는 “대만계 중국인과 조선인을 포함하는 비일본인(non-Japanese nationality) 가운데 귀환 가능한 자는 모두(all repatriable persons) 가능한 빠른 시기에 귀환시킨다.”라는 문구가 “만일 본인이 희망한다면(if they so desire) 가능한 빠른 시기에 귀환시킨다.”라는 문구로 수정되었다.²⁹ 이 수정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김태기는 “귀환 조건에 ‘만일 본인이 희망한다면’이라는 본인의 의사가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기본적인 재일외국인정책(재일조선인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하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미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보다 너른 세계사의 추세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 본다면 소수민족 문제 일반에 대한 미국(그리고 연합국) 정책결정자들의 접근(물리적 배제와 동화)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해결 수단을 결코 망기한 것은 아니었다. 즉 문구의 변화가 보여 주는 것은 재일조선인 문제를 소수민족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물리적 배제의 수단인 ‘강제적’ 송환이 ‘자발적’인 본국 귀환(“만일 본인이 희망한다면”)으로 바뀌어 중점이 옮겨 간 데에 지나지 않는다. 뒤에서 서술할 테지만, 물리적 배제와 동화를 양 축으로 삼는 접근은 이후의 재일조선인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27 “Politico-Military Problems in the Far East: The Post-Surrender Military Government of the Japanese Empire: Displaced Persons in Japan”(August 6, 1945), Records of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5~1948, Reel 6.

28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Far East, “Displaced Persons in Japan”(September 26, 1945), Records of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5~1948, Reel 6.

29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Far East, “Displaced Persons in Japan”(October 5, 1945), Records of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5~1948, Reel 6.

30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68~69쪽.

3. ‘해방’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

앞서 서술했듯 SCAP 외교국의 시볼드는 국무성에 보낸 보고서에서 ‘해방 민족’으로서 조선인의 지위가 ‘조선인의 조선 귀환을 장려하고 귀환을 위한 온갖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한되었다’며, ‘귀환의 특권’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시볼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항복 및 조선인을 ‘해방민족’으로 처우한다는 연합국의 성명을, 일본의 관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³¹

‘일본의 관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으로 재일조선인이 이해했다는 것은 얼마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해방민족’ 규정의 의미가 미국 정책결정자들과 SCAP이 본래 의도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당사자들인 재일조선인들에 의해 다른 형태로 해석되고 ‘유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일조선인은 ‘해방’을 다양한 형태로 주체적으로 실천했으며, 그러한 실천을 통해 ‘해방민족’ 규정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이 행한 ‘해방’의 정치적 실천은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활동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련의 ‘자치대’(自治隊)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일종의 ‘해방공간’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조련은 일본 패전 직후 각지에서 만들어진 조선인들의 상호부조조직을 규합해 1945년 10월 결성된 것으로, 1946년 1월까지 전국에 47개 지방지부를 설치하는 등 재일조선인의 ‘공적 기관’으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³² 또한 패전 직후 일본사회의 혼란으로 조선인들 사이에는 ‘관동대지진 때와 같은 학살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존재했

31 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Status of Koreans in Japan”(May 6, 1948), 895.012/5-648, Reel 5,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32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61쪽; 鄭榮桓, 『朝鮮獨立への隘路』, 18~21쪽.

으며, 조선인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조직을 만들어 갔다.³³

자위집단의 조직화는 곧 조련 중앙본부 지도하에 조련 자치대 결성으로 각지에 퍼져 갔으며, 주로 동포의 생명·재산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예컨대 도치기(栃木)현에서 조선인 두 명이 일본인 청년집단 일곱 명에게 일본도 등으로 습격 당한 사건에서는, 조련 자치대가 일본 경찰과 연락을 취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 집단을 ‘체포’, 경찰에 인도했다.³⁴ 또 교토 점령군 부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니시마이즈루(西舞鶴) 지구에서는 조련 자치대가 “이 지구에 사는 조선인의 질서 유지”에 힘쓰면서 “현 재까지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 조선인 그룹과 [일본]경찰의 협력은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한다.³⁵ 유사한 사례는 다른 지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히로시마현에서는 조련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경찰력’을 발휘해 자치대 등의 그룹이 ‘조선인의 질서 유지’에 힘썼다. 일부 조련 지부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조선인 주민에 대해 ‘처벌’(punishing)을 실시하고, ‘감금’(imprisonment)이나 ‘구타’(beatings)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점령군에 보고되었다고 한다.³⁶ 간혹 이처럼 지나친 치안활동도 전개되곤 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련과 그 자치대가 조선인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다는 자율적 활동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이며, 이 같은 해방의 실천은 8·15 직후 한반도에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그리고 이른바 ‘치안대’(治安隊)의 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³⁷ 조련 자치대의 활동은 일본 경찰과 협력하거나 그 권력에 대항하는

33 조련 자치대의 조직화와 활동에 관해서는 정영환의 연구가 자세하다. 鄭榮桓, 『朝鮮獨立への隘路』, 第1章.

34 『民衆新聞』, 1946년 7월 25일.

35 103 Military Government Compan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Report, 14~21 June 1946”(June 22, 1946), 大矢一人 編, 『軍政(ナンバーMG)レポート』 第7卷, 251쪽.

36 Civil Intelligence Section, “Periodical Summary” 3(October 1, 1946), 川島高峰 編, 『占領軍治安・諜報月報』 第1卷, 現代史料出版, 2001, 259쪽.

37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68~81, 267~276;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195~230쪽.

식으로 전개되었는데,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 남한 지역에서는 8·15 직후 자발적으로 조직된 치안대가 지방 경찰서를 접수하거나, 총독부 경찰과 협력해 치안 유지 활동을 하기도 했다.³⁸ 즉 조선인에 의한 민족자결 추구는 한반도와 일본에서 동시에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와 치안대에 의한 자치 실천이 미군 진주 이후 몇 개월 사이 괴멸된 것처럼, 조련 자치대 활동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되었다.

조련에 의한 자치 실천에 대해 일본정부는 기존의 지배권을 내놓지 않겠다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사법·경찰권을 SCAP에 인정케 함과 동시에 조련 자치대의 활동을 ‘범죄화’해 나간다. 정영환의 연구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 1946년 2월 19일에 발표된 SCAP의 지령 「형사재판권의 행사」에 의하면 일본은 연합국민에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일본정부는 SCAP으로부터 이 ‘연합국민’에 조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승인을 이끌어 냈다. 또 3월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조련을 비롯한 조선인 단체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는데, 조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체포·재판권은 일본정부에게 있다며 자치대의 해산을 명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경찰권과 유사한 일탈행동’을 차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마구치(山口) 현에서는 여아 학대치사사건의 용의자를 경찰과 협력해 연행한 조련 지부의 멤버들이 후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³⁹ SCAP 역시 4월에 조련자치대의 해산을 명했다.

애초부터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해방’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었다. 일본정부의 논리는 과거 재일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대일본제국 신민’이었으며, 패전 후에도 조선의 주권문제가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재일조선인에게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입장은 아니었다. 실제로 재일조선인(및 대만인) 성인 남

38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1964, 86~95쪽.

39 鄭榮桓, 『朝鮮獨立への隘路』, 28~34쪽.

성에게 인정된 참정권은 패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12월, 중의원(衆議院) 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지’되었다. 일본정부의 목적은 일본제국하의 지배질서와 같이, 재일조선인을 일본 국적이라는 ‘우리’에 가두고 일본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종속민족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이 ‘제국신민’의 명에서 해방된 ‘해방민족’으로서 민족자결을 실천했다면,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구 제국의 논리에 의거해 그것을 쓰러뜨리려 한 것이다.

그리고 SCAP이 어떤 의미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재일조선인을 ‘몰아내는’ 귀환 정책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SCAP은 1946년 11월 12일 성명을 발표해 ‘귀환의 특권’을 거부하고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장래 수립될 한반도 정부가 국민으로 인정할 때까지 ‘일본국적을 보지(保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했다.⁴⁰ 이 성명이 재일조선인뿐 아니라 한반도 정치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부르자 SCAP은 성명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 ‘시민권의 획득’이 아니라 ‘일본 법령에 대한 복종’이라 변명했으나, SCAP의 내부방침상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을 ‘일본국적 보지자’로 간주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⁴¹ 중요한 것은 재일조선인의 일본국적 ‘보지’라는 문제가 단순한 ‘국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해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조련의 서울 지부는 남한 지역 정치단체의 대표와 협력해, 재일조선인이 일본국적 보지자로 취급되는 것은 ‘일본의 조선지배 연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⁴² 또한 『조선일보』는 「재일동포의 국적문제」라는 사설을 게재해,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일본[국]적을 떠난 것임은 물론이오 설령 정부는 수립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일동포는 조선국민임에 틀림없지 아니한가?”라며 SCAP의 성명을 문제시했다.⁴³ 마

40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1945~1950』, 15쪽.

41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301~311쪽.

42 『朝鮮日報』, 1946년 11월 21일.

43 『朝鮮日報』, 1946년 11월 15일.

찬가지로 우익계 민족통일 총본부는 “일본은 과거 36년간이나 조선인을 일본국적에 강제편입케 하여 한국의 국권을 침략한 것은 인류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며 “국적을 연장한다는 것은 (중략) 범죄국가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계속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밑줄 친 부분은 원문의 표기에 따름).”라고 비판했다.⁴⁴ 좌익계 민주주의 민족전선도 “국제적으로 약속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사실상으로 부인함과 동일한” 것이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⁴⁵ 더욱이 독립노동당은 조선의 ‘해방’은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본래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합병조약이라는 강도문서가 자연 무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행위의 일부분을 일찰나(一刹那)라도 연장하려는 태도는 천만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⁴⁶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단순히 ‘해방민족’이라는 법적 지위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넘어, SCAP이 일본의 조선 ‘합병’ 역사에 대해 어떤 판단/심판(judgement)을 내리는가, 즉 ‘조선의 해방’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들이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이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SCAP과 주한 미군정은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한다. 주한 미군정의 법률전문가가 1947년 10월 22일 작성한 「재일조선인의 지위: 카이로 합의와 포츠담 선언의 효과」라는 문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정이 재일조선인을 ‘해방국’(liberated country) 조선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성명 발표를 SCAP에 제안한다. 그러자 SCAP 법무국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반대를 표명하며,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조선은 법적인 의미에서 계속하여 일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주한 미군정의 법률전문가는 이러한 SCAP의 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합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중식시켰

44 『自由新聞』, 1946년 11월 17일.

45 『自由新聞』, 1946년 11월 19일.

46 『東亞日報』, 1946년 11월 16일; 『서울신문』, 1946년 11월 16일.

다”(terminated)고 해석했다. 연합국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은 조선의 ‘독립’을 약속하고 있으며, 포츠담 선언의 제8항 역시 일본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이행할 것과 일본의 주권이 일본 본토에 한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항복 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락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권도 종료된” 것이며, 조선은 “완전한 국가는 아니더라도 건설 과정에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주한 미군정 법률가는 간주한 것이다.⁴⁷

그러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권 존속을 부정하는 주한 미군정의 논의도, 일본의 조선 ‘합병’이라는 원죄 그 자체를 묻는 조선인 측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독립노동당이 조선의 ‘해방’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강도문서’에 의해 빼앗긴 ‘본래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조선인 측의 주장은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통해 조선 ‘합병’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SCAP과 주한 미군정은 조선의 ‘해방’을 일본으로부터의 ‘분리’ 문제로 설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권 문제의 근간에는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주권의 ‘종료’와 그 시점에 관한 해석을 두고 견해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4.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문제

이처럼 ‘해방’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 ‘민족교육 옹호투쟁’이다.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문제의 발단은 1948년 1월 24일 일본 정부의 문부성이 공표한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달[이른바 ‘1·24 통달(通達)’]에 있다. 조선인학교는 8·15 직후부터 재일조선인 유

47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Vol. 2, pp. 376~377,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에 수록.

지(有志)와 조련에 의해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1946년 10월까지 초등학교 525개교, 중학교 4개교, 청년학원 12개교가 운영되었으며, 4만 5천 명 가까이 달하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이 같은 조선인학교에 취학했다.⁴⁸ 교사(敎舍)를 비롯한 교육시설, 교원, 교과서 등 모든 것을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문부성의 통달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 재류하는 조선인은 1946년 11월 12일부 SCAP의 성명에 따라 일본 법령에 복종해야 한다. ② 따라서 학령아동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시·정·촌립(市町村立) 또는 사립 초·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 사립 초·중학교 설치는 학교교육법에 의거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知事)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학령아동 교육에 대해서는 각종 학교의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사립 초·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법이 적용된다. ⑥ 조선어 등의 교육을 과외(課外)로 시행하는 것은 인정된다. 즉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법령’에 따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일본의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했으며, 조선학교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로서 지방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 내용도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라야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재일조선인 교육의 자주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⁴⁹

조련은 문부성에 보낸 항의문에서 재일조선인은 ‘조선 국적’을 보지하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다며, 일본 “사법권의 관할권 내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선아동의 의무교육에[대해서]까지 일본 법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문부성의 통달은 “일본 법령에 대한 복종을 구실로 다 시금 노예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⁵⁰ 즉 앞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의 강요가 ‘일본의 조선지배 연장’을 의미했던 것과 같이, 자주적인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 법령’의 적용은 식민지시대

48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138쪽.

49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186쪽.

50 『解放新聞』, 1948년 3월 1일.

‘노예교육’(동화교육)의 연장으로서 실로 ‘해방’의 부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조련이 저항 태세를 관철하자 문부성은 이 통달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실제로 도쿄, 오카야마(岡山), 효고(兵庫), 야마구치 등지에서 무인가 조선인학교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다.⁵¹

일본정부가 시행한 이 같은 강경 조치의 배경에는 SCAP의 전면적인 지시와 지시가 있었다. 김태기의 연구에서 뚜렷이 알 수 있듯이, 특히 지방의 점령 당국이 조선인학교는 일본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에 강경한 자세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점령 당국은 조련이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8·15 정치학원(政治學院)’이라는 청년학교에서 ‘공산주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조선인 교육 전체에 대한 관리의 강화를 주창하게 되었다.⁵² 즉 재일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법령에 완전히 복종시키려는 SCAP 및 일본정부의 지배 논리가 재일조선인의 ‘해방’ 실천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새로이 ‘냉전’이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구도를 교육 문제의 배경에서 짚어 낼 수 있다. 더불어 냉전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전후 세계질서 형성의 또 다른 국제 정치적 흐름이었던 ‘국제인권레짐’의 탄생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쟁 시기부터 전후에 걸쳐 국제 무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정치 담론이 만들어지면서, 재일조선인에 의한 자율적·자주적 민족교육 실천은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전술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연합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국제연맹시대의 소수민족 국제보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민족자결’ 및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이념이 나치 독일의 팽창정책에 악용되기도 했으며, 소수민족의 권리는 국제평화나 안전보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⁵³ 그 대신 주장된 것이 ‘인권’의

51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403쪽.

52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388~404쪽.

53 Jennifer Jackson Preece, *National Minorities and the European Nation-States System*, Clarendon Press, 1998, p. 96.

보호였다. 예컨대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에드바르트 베네시(Edvard Beneš)는 1942년 1월 *Foreign Affairs*지에 실린 글에서 유럽 전후질서의 전망을 논하면서, 장래의 마이너리티 보호는 ‘민족의 권리’(national rights)가 아닌 ‘인간의 민주적 권리’(human democratic rights)를 보호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⁴ 그리고 국제연맹시대의 소수민족 보호제도로부터의 ‘철퇴’(撤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1945년 6월에 조인된 국제연합헌장(이하 ‘유엔헌장’)이다. 유엔헌장에는 전후 국제인권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명문화된 반면 국제연맹시대와는 달리 소수민족의 적극적 보호와 특별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대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방지’가 강조되었다. 즉 국제법학자 요하네스 모르싱크(Johannes Morsink)의 말을 빌리자면, 국제연맹시대에 겪은 실패의 반동으로 유엔헌장은 소수민족 문제를 ‘완전히 묵살’했고, 그 대신 ‘보다 일반적인 원칙’인 차별 방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⁵⁵

더욱이 유엔의 제노사이드 조약과 세계인권선언 채택 과정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보호정책이 ‘동화’ 이념과의 대항 끝에 묻혀 버리게 되었다. 1948년 5월 제노사이드 특별위원회가 기초한 초안에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으로서 당초 어떤 집단[특히 ‘민족집단’(national groups)]에 대한 ‘육체적 파괴’(physical genocide)에 그치지 않고, 언어나 예술 등 ‘문화’의 파괴를 의미하는 ‘문화적 제노사이드’의 영역도 포함되었다. 이 문화적 제노사이드 개념은 주로 공산국가와 아랍국가가 지지하는 것이었는데, 동화정책을 지지하는 미국과 서구진영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조약안에서 삭제되었다.⁵⁶

또한 제노사이드 조약이 체결된 다음 날(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역시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해 같은 운명에 다다르게 된다. 당

54 Eduard Beneš, “The Organization of Postwar Europe,” *Foreign Affairs*, 20, 2, January 1942, p. 239.

55 Johannes Morsink,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 271.

56 Roger Norman and Sarah Zaidi, *Human Rights at the UN: The Political History of Universal Justice*,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pp. 250~253.

초 선언문의 초안에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보호로서, 차별방지와는 구별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공적 자금에 의한 문화·종교시설 및 학교 설립과 유지)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내에 인종 문제를 떠안고 있는 미국 등의 반대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초(起草) 과정에서 삭제되었다.⁵⁷ 즉, 본래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동화로부터의 보호’를 두 축으로 삼았던 소수 민족의 권리는, ‘인권’ 담론에 회수되면서 후자의 축이 제외되었고 그와 동시에 보다 일반적인 개인의 권리와 평등(‘인권’) 문제에 용해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 마이너리티 ‘동화’라는 이념이었다.

이처럼 전후 국제인권레짐의 기반은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한 보호정책을 부정함으로써 성립된 것이었으며, 실로 “인권의 기묘한 승리”(Mark Mazower)⁵⁸였다. 중요한 것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문제가, 냉전 구조의 형성과 함께 이 같은 국제인권레짐의 개막과 동시진행으로 부상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출을 체현한 미국의 점령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SCAP은 애초부터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문제를 ‘동화’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1946년 8월 28일에 SCAP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ection)이 작성한 문서는 조선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1) 독자적인 학교가 큰 분쟁의 씨앗(considerable dissension)이 될 마이너리티 집단을 육성할 위험성.
- (2) 조선인의 본국 귀환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해당 마이너리티 집단의 수가 몇 년 후 혹은 가까운 장래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 (3) 일본 내의 독자적인 조선학교라는 요구는 조선인이 주장하는 민족 독립이

57 Roger Norman and Sarah Zaidi, *Human Rights at the UN: The Political History of Universal Justice*, pp. 253~255.

58 Mark Mazower, “The Strange Triumph of Human Rights, 1933~1950,” *Historical Journal*, 47, 2(June 2004).

나 조국 재건과는 모순된다.⁵⁹

위의 내용에서 전쟁 시기부터 지배적이었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접근, 즉 한편으로 소수민족을 가능한 한 본국으로 송환해 그 수를 감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화를 추진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접근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SCAP의 부정적인 자세에 냉전적 사고가 새로이 더해지면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강경한 방침이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 1947년 중반부터 점령 당국 내부에서는 조선인학교가 ‘공산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더불어 역사학자 아라 다카시가 밝힌 바와 같이,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옹호투쟁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미운동과 연동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1948년 4월 10일부 점령 당국 문서에는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남한 총선거 전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반대투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와 연동해 재일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드러나 있는데, 이 같은 점령 당국의 정세 인식이 후술할 ‘고베사건’에 대한 초강경 조치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⁶⁰

5. ‘고베사건’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학교 폐쇄령은 재일조선인들 사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폐쇄를 실행한 지방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 운동이 각지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1948년 3월 31일 약 1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현청 앞에 모여 항의해 폐쇄 연기 약속을 쟁취해 냈다.

59 Edwin F. Wigglesworth to Colonel Orr, “Separate Korean Schools in Gifu Prefecture”(August 28, 1946), Folder: 000.8 Korean Schools, Box 568, CIE 04145, GHQ/SCAP Records, 日本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60 荒敬, 『日本占領史研究序説』.

4월 23일에는 오사카 부청 앞에서 약 1만 5,000명의 조선인들이 항의 운동을 벌였으며, 다음날에는 가까운 고베시에서도 약 5,000명이 현청 앞에 모여 항의를 진행했다.⁶¹ 고베시에서 이루어진 이 항의 운동은 조선인 대표단이 지사와 직접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사를 연금(軟禁) 상태에 두고 요구를 받아들이게 해 점령 당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아이켈버거(Robert L. Eichelberger) 제8군 사령관의 지령을 받은 고베 기지 사령관은, 그날 밤 고베시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본 경찰을 직접 지휘하에 두었을 뿐 아니라 미군 부대까지 동원해 사흘에 걸친 대규모 조선인 검거를 시행했다. 점령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4일 밤부터 27일에 이르기까지 약 2,000명의 조선인이 검거되었는데, 그들 중 다수가 항의집회 간여 여부와는 상관 없이 단지 일본 경찰이 조선인이라고 식별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고 한다.⁶² 또 조련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우익계 재일조선인 조직인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의 효고현 본부는 ‘조선인 사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같은 무차별 검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조련 관계자 적발에 앞장섰다.⁶³

점령 당국과 일본 경찰 당국은 곧바로 고베의 항의 운동이 남한의 반미 데모와 연동된 ‘공산당이 선동한 폭동’이라 선언했다. 아이켈버거는 4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오사카-고베 지구에서 일어난 폭동은 틀림없이 일본 공산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조선인 30명과 일본인 8명이 검거되었는데, 그 일본인 8명은 공산당의 정식 당원”이라고 말했다.⁶⁴ 또 제8군 첩보국의 조지 존스(George Jones)는 국제공산주의의 음모를 시사하며, “남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요 사건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확신한다. 학교 문제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

61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189~194쪽.

62 Douglas Jenkins to William J. Sebald (May 4, 1948), enclosure to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Korean Demonstrations in Kobe, Japan” (May 11, 1948), 894.4016/5-1148, Reel 15,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Japan, 1945~1949.

63 鄭米桓, 『朝鮮獨立への隘路』, 217~220쪽.

64 『朝日新聞』, 1948년 4월 27일.

했다.⁶⁵ 일본의 경찰 당국도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에서의 데모를 꾸몄고, 5월 10일 조선[남한]에서 열릴 선거와 함께 도쿄에서 큰 집회를 열어 클라이맥스를 달성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견해를 발표했다.⁶⁶

이러한 고베사건에 대해 이제껏 주목받은 적은 없으나, ‘비상사태’ 선언 하에 동원되어 ‘조선인 사냥’을 떠맡은 미군부대는 이른바 ‘흑인부대’라 불리는 제24보병연대였다. 흑인 병사들만으로 구성된 제24보병연대는 미국 동군 가운데 유일하게 세 개 대대를 가진 대규모 연대였으며, 그와 동시에 실로 미군 내 ‘인종 격리’의 상징이었다. 종전 이후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24보병연대는 1947년 1월 기후(岐阜)현 미군 캠프로 이동했는데, 그 중 일부 부대는 1948년 1월부터 초병으로 고베 기지 경비에 배치되었다.⁶⁷ ‘비상사태’ 선언을 발표한 고베 기지 사령부는 백인 헌병부대가 아닌 흑인 초병들로 이루어진 이 부대를 현장에 파견해 일본 경찰과 함께 조선인 검거를 실행케 했다. 즉 ‘비상사태’가 시행된 고베에서는 ‘백인’ 미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유색인종’ 집단(흑인부대·일본 경찰·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의 공동 작업이 전개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아이켈버거는 흑인부대의 ‘활약’에 대해, “정말이지 훌륭한 부대다. 모두 훌륭한 병사들로 자랑스럽다”(a darned good outfit—full of good soldiers; I’m proud of them)고 칭찬하는 동시에, 흑인부대를 이용한 데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컬러 라인[인종의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략)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었다”(use of the Negro troops was not resented, as no color line exists in Japan)고 말했다.⁶⁸ 미국 내 주요 언론은 주로 AP 통신 기사에 근

65 *New York Times*, April 26, 1948.

66 *New York Times*, April 27, 1948.

67 제24보병연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William T. Bowers, William M. Hammond, and George L. MacGarrigle, *Black Soldier, White Army: The 24th Infantry Regiment in Korea*,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6; Gail Buckley, *American Patriots: The Story of Blacks in the Military from the Revolution to Desert Storm*, Random House, 2001.

68 *New York Times*, April 26, 1948. 마찬가지로 다른 미국 잡지에서도 AP통신 기사에 근거해 아이켈버거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Washington Post*에서는 “use of the troops was not resented, as no color line exists in Japan”(Washington Post, April 26, 1948)으로, *Chicago Daily Tribune*에서는 “use of Negro troops was not resented here by Japanese or

거해 이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는데, 그 표제와 내용에서는 한결같이 재일조선인의 항의운동을 ‘빨갱이 폭동’(red riot)으로 거론하였으며, 이 폭동을 ‘미국의 흑인 병사’가 ‘무력한 일본 경찰’을 대신해 진압했다고 소개했다.⁶⁹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서도 고베사건은 같은 형태로 보도되었다.⁷⁰

이 고베사건은 이중의 의미로 재일조선인 문제의 ‘냉전정치화’(Cold War politicization)를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앞서 서술했듯 고베사건의 배경으로서, 점령 당국이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옹호투쟁을 한반도의 반미운동과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민족교육 문제가 ‘냉전의 렌즈’를 거쳐 인식되고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베사건에 대한 점령 당국의 성명과 신문 보도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문제는 공식적으로 냉전의 문제로 정의되었으며, 미국의 냉전 담론에 얹혀 들게 되었다. 제8군 첩보국의 조지 존스가 ‘학교 문제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제 공산주의의 음모를 강조했듯이, 점령 당국은 고베사건을 ‘빨갱이 폭동’과의 대결이라는 문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언론을 통해 선전되면서, 일본 국내의 민족 문제가 국제 냉전의 문제로 전화(轉化)하는 담론의 재배치가 전개되었다.

동시에 흑인부대의 ‘활약’이 미국 언론에 의해 고베사건의 표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됨으로써, 일본 국내의 민족 문제가 미국 내 인종 문제와 교차하게 되기도 했다. 흑인 유력지인 *New York Amsterdam News*에는 흑인부대를 이용한 점령 당국의 재일조선인 탄압을 통렬히 비판하는 투서가 게재되었는데,⁷¹ 투서의 주인은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맞서

Koreans”(April 26, 1948)로 소개된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Afro American*에서는 “use of the colored men was not resented because there is no prejudice in Japan”(May 1, 1948)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69 *New York Times*, April 26, 27, and 28, 1948; *Washington Post*, April 26, 1948; *Los Angeles Times*, April 26 and 27, 1948; *Chicago Daily Tribune*, April 26 and 27, 1946.

70 *Afro American*, May 1, 1948; *Journal and Guide*, May 1, 1948; *New York Amsterdam News*, May 1, 1948. *New York Amsterdam News*, May 8, 1948.

71 *New York Amsterdam News*, May 8, 1948.

는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NAACP)] 뉴욕 지부의 고문(顧問) 토머스 존스(Thomas R. Jones)라는 인물이었다.⁷² 투서에서 존스는 “조선인 탄압”에 흑인부대를 사용한 것은 “계획적인 도발 행위”이며, “억압받는 조선인”(oppressed Koreans)과 “억압받는 흑인”(oppressed Negro people) 간에 “반목과 증오”를 부채질함으로써,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양 민족의 “연대”를 저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존스는 재일조선인이 일으킨 이 항의 운동을 “조선인 아동에게 일본어로 된 교육을 강요하는 일”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했으며, 미군에 의한 탄압은 “최근까지 일본의 군벌과 자본가들에 의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짓밟으려는 시도”이자 “파시스트의 수법”(fascist tactic)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재일조선인 탄압을 미국 내 소수민족 탄압의 연장으로서, 즉 “흑인, 인디언(아메리칸 원주민), 푸에르토리코인, 멕시코인, 그리고 중국인을 향한 우리 나라의 비미(非米)[활동위원회] 정책의 연장”(an extension of the un-American policy)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투서를 결론 짓는다.⁷³

이러한 존스의 주장은 그때까지 흑인 운동이 갖고 있었던 반제국주의 및 “피억압민족과의 국제적 연대”라는 사상의 흐름을 이어받는 것이었다.⁷⁴ 중요한 것은 존스가 고베사건의 흑인부대 이용 문제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발견’했고, 미국 내 소수민족 문제와 공통의 지평으로 이해하며 연대의 말을 던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고베사건은 미국 언론을 통해 흑인부대에 의한 ‘빨갱이 폭동’의 진압으로 표상되었고 재일조선인 문제가 미국의 냉전 담론과 얽혀 들게 된 계기였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국경을 뛰어넘은 일종의 대항 담론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

72 Thomas R. Jones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했다. “Thomas R. Jones, 93, a Judge Who Agitated for Urban Revival, Dies,” *New York Times*, November 1, 2006.

73 *New York Amsterdam News*, May 8, 1948.

74 제2차세계대전부터 전후에 걸친 흑인운동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는, Penny M. Von Eschen, *Race against Empire: Black Americans and Anticolonialism, 1937~1957*,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스는 고베사건의 흑인부대 이용을 피억압민족에 대한 일종의 이간(離間) 정책으로 파악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점령 당국은 왜 ‘조선인 사냥’에 흑인부대를 동원하였는가? 또 그것은 당시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었는가? 고베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보고한 점령 당국 문서에는 흑인부대를 이용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⁷⁵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아이켈버거가 ‘일본에는 컬러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에서 드러나듯이, 분명 ‘인종 문제’가 의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인종 문제’와 고베사건에서 드러난 재일조선인 문제의 ‘냉전정치화’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흑인부대 이용의 의미는 미국의 글로벌냉전 전략에서 미국 내 인종문제가 갖는 중요성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무대에서 소련이 미국 내 흑인 차별·린치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으면서 냉전 프롭가간다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인종 문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 냉전전략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었다.⁷⁶ 미국정부는 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흑인 차별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그와 동시에 국제인권레짐의 개막을 맞이하는 유엔에서 이 문제가 미국의 국제적 위신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었다.

1947년 10월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CCP)가 미국의 흑인 차별

75 DS to C/S, “Korean Disturbances in Kobe and Other Places”(April 27, 1948), Enclosure to Dispatch No.251 dated April 29, 1948, 895.00/4-1948, Reel 2,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Douglas Jenkins to William J. Sebald(May 4, 1948), enclosure to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Korean Demonstrations in Kobe, Japan”(May 11, 1948), 894.4016/5-1148, Reel 15,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Japan, 1945~1949.

76 Mary L. Dudziak, “Desegregation as a Cold War Imperative,” *Stanford Law Review*, 41, 1, November 1988; Paul Gordon Lauren, *Power and Prejudice: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Racial Discrimination*, Westview Press, 1988, chapter 197~209; Carol Anderson, *Eyes off the Prize: The United Nations and the African American Struggle for Human Rights, 1944~19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hapters 2 and 3.

을 규탄하는 탄원서, 「세계에 호소한다」(An Appeal to the World)를 유엔에 제출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NAACP는 미국 남부의 흑인 억압을 문제삼으면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러시아보다도 오히려 미시시피이며”, “외국에서 온 침입자의 공격보다도, 국내에서 우리 흑인 형제들에게 가해지는 부정행위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⁷⁷ 소련의 유엔 대표는 이를 미국의 위신을 실추시킬 기회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NAACP의 탄원서가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손을 썼다.⁷⁸ 또한 당시 미국을 방문한 비백인 국가의 유엔 대표들이 피부색을 이유로 숙박시설이나 식당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는데, 국무성 정책결정자들은 국내의 인종차별이 대외 관계를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교묘한 프로파간다 접전’의 재료를 공산주의 국가에 제공하고 있음을 우려했다.⁷⁹

이처럼 인종 문제는 미소 냉전 프로파간다 교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데, 고베사건을 둘러싼 점령 당국의 논의에도 이 같은 국제 정세가 반영되어 있었다. SCAP 외교국의 시볼드는 제8군 참모본부에 보낸 문서에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옹호투쟁과 공산당의 연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점령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련이 조선뿐 아니라 조선인 마이너리티 집단(Korean minority groups)의 보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선전”하기에 알맞은 재료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⁸⁰

다시 말해 인종 문제가 미국 냉전 전략의 ‘아킬레스건’이 된 상황 속에서, 고베사건의 흑인부대 이용은 점령하 일본에서 ‘백인지배자’에 의한 ‘유색’ 소수민족의 억압이라는 구도를 회피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켈버거를 위시한 제8군 참모본부가 고베사건을 민

77 Dudziak, “Desegregation as a Cold War Imperative,” pp. 94~95.

78 Anderson, *Eyes off the Prize*, pp. 108~112.

79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204.

80 DS to C/S, “Korean Disturbances in Kobe and Other Places”(April 27, 1948), Enclosure to Dispatch No.251 dated April 29, 1948, 895.00/4-1948, Reel 2,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족 문제가 아닌 ‘빨갱이 폭동’으로서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을 강조한 데 비해, SCAP의 시볼드는 외교관답게 그러한 주장이 도리어 소수민족 문제를 이용하려는 ‘소련의 술책에 빠지게’⁸¹ 될까 경계한 것이다.

6. 마치며

이 글에서는 냉전과 국제인권레짐의 형성이라는 전후의 두 가지 국제정치 전개와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고찰했다.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 제시된 재일조선인의 처우에 관한 ‘해방민족’ 규정은, 재일조선인의 ‘본국 귀환’(repatriation)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 ‘해방’이었으며, 일본에 머무르려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SCAP 정책결정자들은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소수민족 문제의 일환으로 이해했으며, 본국 귀환을 장려해 가능한 한 ‘몰아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유럽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소수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된 ‘인구 이동’(population transfer)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연합국 정책결정자들은 소수민족에 대한 국제연맹시대의 적극적 보호 정책이 민족 갈등 해소에 성공하기는커녕 도리어 민족 분쟁의 불씨를 낳고 말았다는 반성으로부터, 소수민족의 존재를 물리적 배제와 동화에 의해 제거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에 의거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인권’ 보호의 이념이었다. 전후 국제인권레짐이 형성된 초기 과정에서는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차별방지)만이 국제적 규범 이념이 되었고, ‘동화로부터의 보호’라는 국제연맹시대의 규범 이념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저항에 마주치며 매장되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 교육 문제는 실로 이러한 국제 규범 이념의 전환기에 부상했는데, 소수민족

81 DS to C/S, “Korean Disturbances in Kobe and Other Places”(April 27, 1948).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화주의적 접근은 SCAP의 재일조선인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즉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조선 국적’의 보지자로서, 즉 ‘조선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율적인 민족교육을 추구했다면, SCAP은 재일조선인을 ‘일본 국적’을 유지한 소수민족으로 취급하며 ‘본국 귀환’ 또는 일본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함으로써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다. 더불어 고베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문제는 글로벌 냉전이라는 또 다른 국제정치의 전개와 교차되었다. 재일조선인의 ‘해방’ 실천은 SCAP의 정책을 통해 복합적인 세계질서의 형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손혜경(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번역가)이 번역했다.